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 - 1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2015. 7.21.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창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성교육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인성교육진흥협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부터 안 제8조까지)
-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3, 팩스 032-440-87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박종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71
----------	-----

발의연월일: 2016. 2. 17.

발 의 자: 박종우 의원

(찬성자 13인)

1. 제안이유

2015. 7.21.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창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성교육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인성교육진흥협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 마.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
6.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교육감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협의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 제2조(정의) ○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 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외부위원(교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이 위촉될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관련 참석수당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산출한 결과 소요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됨

4. 작성자

교육위원회 박 중 우 의원